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67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김재섭 · 서천호 · 강승규
조은희 · 고동진 · 권영세
김기웅 · 조정훈 · 엄태영
이현승 · 김용태 · 김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라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고,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할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추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기금 대여·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특례는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70조의3, 제72조 및 제74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예비 관광특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일 것
 2.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닐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

2. 예비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70조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날

⑤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예비 관광특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관광특구를”을 “관광특구(제70조의3에 따른 예비 관광특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0조의3에 따른 예비 관광특구(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0조의3(예비 관광특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에 따라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u> <u>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일 것</u> <u>2.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u> <u>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u>

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
2. 예비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70조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날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
 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은 예비 관광특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취
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
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
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시·도지사”는 “시·도지
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 관광특
구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관광특
구(제70조의3에 따른 예비 관
광특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

② (생략)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0조의3에 따른 예비 관광특구(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u>
--	--